

6.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18년 9월 21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자치행정국장)
- 회부일자 : 2018년 9월 28일
- 상정일자 : 제26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18년 10월 12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진광식)

□ 제안이유

-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,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제한(1회만 연임) 규정 삭제(안 제4조)
- 행정재산의 지적정리 조항을 신설(안 제18조의2)
-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 신설(안 제38조)
-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용어와 표현으로 정비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서오섭)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▶ **안 제4조에서**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당초 2년,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, 상위법령에 따라 임기를 2년으로 개정하였음.
시행령 제7조의2(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) 제2항에 따르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으며, 연임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아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음.
민간위원의 계속연임이 고도의 전문 지식, 기술이 필요한 공유 재산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심의·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생각되나, 객관적이고 투명한 민간위원 선정 과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독립성,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.
- ▶ **안 제18조의2에서** 도로·하천개설 및 변경, 공원조성 등 각종 사업의 준공 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및 구·군의 공유재산 사업추진 부서의 장이 토지합병, 지목 변경 등의 지적정리를 하도록 하였음.
행정재산의 지적정리를 사유발생시 처리하도록 하여 앞으로 공유재산을 명확하게 관리하도록 하였음.
- ▶ **안 제38조에서**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하였음.
시행령 제39조(대금의 납부 및 연납)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,
부산, 인천 등 타 광역시도에서도 대구시와 같이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참 고

대구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

임기 : 2018. 1. 18 ~ 2020. 1. 17 (2년)

연번	직 위	성 명	성별	소 속	비 고
1	위원장	이 상 길	남	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	당연직
2	부위원장	이 영 선	여	(前)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	위촉직
3	부위원장	진 광 식	남	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장	임명직
4	위원	장 이 희	남	대구광역시 건축주택과장	"
5	"	권 오 중	남	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장	"
6	"	성 백 춘	남	대구보건대학교수	위촉직
7	"	서 경 규	남	대구가톨릭대 교수	"
8	"	정 소 임	여	(주)동우이엔씨건축사무소	"
9	"	임 성 미	여	임성미세무사무소	"
10	"	양 태 현	남	이촌회계법인	"
11	"	박 현 미	여	법무법인 동승	"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	답 변
○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임기의 연임규정이 삭제되었는데 연임에 대한 횟수 제한은 필요하지 않은지?	○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연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으므로 별도로 연임규정을 두지 않아도 연임에 대한 횟수 제한 가능함.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 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